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가단123872 판결 [보증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예울

담당변호사 유성춘, 이옥현, 김민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김규엽, 백춘기

변론 종결 2019. 8. 29.

판결 선고 2019. 10.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472,873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2019. 5. 31.까지는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D 신발 판매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약서(이하 '이 사건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제1조(계약의 목적)

갑(피고)과 을(원고)은 C(D신발 :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호,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 및 협업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출자의무) 본 계약에 따라 갑과 을의 투자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C 운영에 관한 D 본사와의 물품 수주일체

을은 권리금 3,500만 원,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단, 계약종료 후 권리금에 대한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제2조의 1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의 종료 후 을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제2조의 1(계약종료 후 권리금 등의 반환)

1 갑은 본 계약이 기한의 만료에 따라 종료될 경우 을이 출자하였던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권리금 3,500만 원의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을에게 즉시 반환한다.

가. 2018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 4억 원 이하의 경우

매출 3억 원의 경우 500만 원, 매출 4억 원의 경우 1,500만 원을 기준액으로 하여 실제 2018년도 매출액을 이에 비례시켜 산정한 금액. 다만, 매출이 3억 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달리 권리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나. 생략

2 갑의 의무불이행 등 유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해지 등 종료가 될 경우, 갑은 이러한 종료 후 즉시 을에게 임차보증금 3,000만 원 및 권리금 3,500만 원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조(이익 분배)

1 판매이익(실제 판매가 - 신발원가)은 갑 4 대 을 6의 비율로 균분하고, 부가세, 신발값, 임대료, 관리비, 직원 1명, G, H, 전화, 인터넷, 행낭, 카드수수료를 1:1의 비율로 공제한다.

2 상기 공제 내용 이외의 잡비는 을이 지원하기로 한다.

3 이익금은 매월 말일 정산하여 분배한다.

제9조(계약해지사유)

1 갑과 을 중 본 계약에 관한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위반 당사자가 그 기간 내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위 1항에 불구하고 다음의 각 호중 하나의 경우에 을은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바. 갑이 매월 정산을 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매출 내용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을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아.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를 주장하여 갑의 매장 운영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해지 및 권리금 일체를 포기하기로 함

제10조(손해배상)

갑과 을은 이 계약이 당사자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여 왔으며,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아들인 I 과장이 매월 작성해서 보내는 정산서의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8. 1.부터 5.까지 D 본사로부터 물건을 정상가의 36%의 가격에 공급받았는데, 원고와 정산하면서는 피고가 D 본사로부터 해당 물건을 정상가의 40%의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계산하여 정산하였고, 위와 같은 물품원가의 차이로 인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1.부터 6.까지 거래물품에 관한 정산 차액은 3,472,873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D 본사로부터 물건을 정상가의 36%의 가격에 공급받으면서도 원고에게 물건을 정상가의 40%의 가격으로 공급받는 것으로 계산하여 정산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차액 3,472,873원의 손해를 입게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제9조 제2항 바.호에서 정한 '갑(피고)이 매월 정산을 함에 있어 고의적으로 매출 내용 등을 허위로 만들어 을(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2018. 7. 5.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2018. 7. 5.자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그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의 1 제2항에 따라 임차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3,500만 원 전액 및 위 정산 차액 상당의 손해금 3,472,873원 합계 68,472,87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소장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7. 24.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고 한다.)의 시행일 전날인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이 사건 시행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D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최종 공급률은 연말에 최종 조정하여 확정하는 것인바,

원고와 매월 정산은 일단 위 공급률을 40%로 계산하여 정산한 후, 연말에 피고와 D 본사 사이에 최종 공급률이 확정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에 따라 다시정산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와 D 본사 사이에 최종 공급률을 연말에 조정하여 확정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와 D 본사 사이의 물품대금 정산은 매월 또는 일정한 간격으로 정산하였을 것인데, 그때 피고가 D 본사와 정산하는 공급률을 그대로 원고에게 적용하여 정산한 후, 연말에 최종 확정된 공급률로 다시 정산하는 것이 보다 투명한 정산방법으로 생각되는 점, 피고가 원고와 정산함에 있어 '매월40%의 공급률로 계산하여 정산한 후 연말에 최종 확정된 공급률로 다시 정산하는 것'과 '매월 본사와 정산한 공급률을 그대로 원고와의 정산에 적용하여 정산한 후 연말에 최종 확정된 공급률로 다시 정산하는 것'은 그 정산에 드는 피고의 노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원고가 2018. 1. 4. 피고의 아들 I 과 통화하면서 피고가 D 본사로부터 받는 공급률이 36%가 아닌지를 물어보자, 위 I은 여러 사정을 들면서 공급률이 40%라고 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정산하면서 피고가 D 본사로부터 받는 물품가격의 공급률을 40%로계산하여 정산한 후 연말에 최종 확정된 공급률로 다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